

## ■ 범정학술논문상 시행 내규 ■

제정 : 2003. 4. 1

개정 : 2005. 4. 1

개정 : 2016. 11. 29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학생의 연구활성화를 도모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① 매학기 대학원 석사학위과정·박사학위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이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 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(SCI, SSCI, A&HCI, SCIE, SCOPUS 등) (이하 “학술지”)에 게재(게재예정으로 확정)한 논문 또는 공모논문에 당선된 논문(2016.11.29. 개정)

② 매 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석사·박사 학위논문

제3조(시상) ① 제2조①항의 논문은 단독연구, 2인 공동연구, 3인 이상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하는 연구장려장학금을 지급한다.

② 제2조②항의 논문은 석사학위·박사학위과정 각각 최우수논문 및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학위수여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.

제4조(선정방법) ① 학술지에 게재(게재예정으로 확정)된 논문은 이 학술상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게재(게재예정으로 확정)일이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, 매 학기 소정의 신청서 [주임교수 추천서, 논문게재(예정)확인서, 해당 논문의 별쇄본 포함]를 제출하여, 우수논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(2016.11.29. 개정)

② 학위논문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논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논문 석사·박사 각 1편, 우수논문 석사·박사 각 5편 이내를 선정한다.(2005.3.25. 개정)

제5조(우수논문심사위원회)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논문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수논문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대학원 교학처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대학원장이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촉하고, 대학원 교학행정팀장을 간사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대학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추천내용을 심사하여 학술지에 게재(게재예정으로 확정)된 논문에 대하여는 연구장려금의 지급범위를 결정하고, 학위논문에 대하여는 최우수 논문 석사·박사 각 1편, 우수논문 석사·박사 각 5편을 선정한다. 다만, 선정할만한 우수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11.29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